즉시접수	당일접수
제출자	
	건



전세권말소등기신청

71	수		년	월	일		•		구기관	확	인			각종	통지
접		제			호	⁻ 저	리인	1							
,							부동	동산의	표시						
등기]원역	인과 그	그 연	원일]		년		월	Ç	길				
나 _o	フ).	의 목	적												
말 소 할 등 기															
구분		성 (상 <u>:</u>	호. 명				민등록 기용등	는 번호 록번호)	주	<u>.</u>	소	(소	재	지)	지 분 (개인별)
등기															
등기의무자															
자															
등기															
등기권리자															
디 자															



등 록 면 허	세	70	_				원
지 방 교 육	세	급	-				원
세 액 합	계	급	_				원
		그	-				원
등 기 신 청 수 수	- 豆	납부번호	. •				
		일괄납부	- :		원		
	등기]의무자의	등기필]정보			
부동산고유번호							
성명(명칭)		일런병	번호		비밀번호		
	첨	부	서	면			
해지증서등록면허세영수필확등기신청수수료 영수등기필증위임장		통 통 통	〈기 타	->			
		년	월	일			
위 신청인					전화 : 전화 :)
(또는)위 대리	인				(전호	}:)
지	방법원					귀중	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전세권말소등기신청

	フ)	١	년	월	일	-1	1	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접	宁	제			호	처	리	인		

① 부동산의 표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
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㎡ 2층 100㎡

이 상

2 5	F기원인과 그 연월일	2017년 5	월 25	릴 해지	:		
3 등	등 기 의 목 적	전세권설정	등기말:				
4 E	날 소 할 등 기	2015년 5월 전세권설정		일 접수	제1001	호로 등	기한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 (등기용등록변		주 소	· (소 재	지)	지 분 (개인별)
⑤ 등 기 의 무 자	김 갑 동	801231-1234	567	울특별시 20(서초 ·	서초구 동)	서초대	
◎등기권리자	이 대 백	700101-1234	567	울특별시 88길 10(서초구 서초동)	서초대	



⑦ 등 록 면 허 세	금	6,000 원								
⑦ 지 방 교 육 세	금	1,200 원								
⑧ 세 액 합 계	금	7.200 원								
	금	3,000 원								
⑨ 등기신청수수료	납부번호 : 12-12-1234	5678-0								
	일괄납부: 건	원								
(II)	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									
부동산고유번호	1102-2006-00	2095								
성명(명칭)	일련번호	비밀번호								
김갑동	A33D-MO73-35J1	41-1234								
(I)	D 첨 부 서 면									
• 해지증서	1 통 〈기 타〉									
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	서 1 통									
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										
· 등기필증	<u> </u>									
· 위임장										
11 11 0	0									
	2017년 5월 25일									
12) 위 신청인 김		· : 010-1234-5678)								
	이 대 백 ① (전호	÷ : 010-5678-1234)								
(또는)위 대리인		(전화:)								
いるのに	아 기바바이 트기그	コ) ス								
시절중 6	방 지방법원 등기국	गठ								

삭2행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 2.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 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등기신청안내서 -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

■ 전세권말소등기란

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입니다.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의무자,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① 공동신청

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② 단독신청

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
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,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■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한국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산이나 신청인산 등이 부족항 경우에는 벽지를 사용하고, 벽지를 포함한 신청서의 각 장 사이에는 간인(신청 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)을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부동산을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 야 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방법은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, 지목, 면적을 기재하고,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, 도로명주소(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), 건물의 종류, 구조, 면적,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,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, 구조와 면적을 기재합니다.
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

등기원인은 전세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"해지", "혼동"등으로, 연월일은 해지연 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.

③ 둥기의 목적란

"전세권설정등기말소"라고 기재합니다.

④ 말소할 등기란

말소할 전세권등기의 접수연월일,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.

⑤ 둥기의무자란

전세권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전세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,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⑥ 둥기권리자란

소유자(전세권설정자)를 기재하는 란으로,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.

⑦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 6,000원, 지방교육세 1,2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.

⑧ 세액합계란

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⑨ 둥기신청수수료란

- ② 부동산 1개당 3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 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①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⑩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

⑦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(정중앙에 보안스티커 가 부착되어 있음)'를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하고 '등기필정보 및



등기완료통지서'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. 또한 이미 사용했던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을 유의(다만, 50개의 비밀번호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이 가능)하시기 바랍니다.

- ①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'등기필증(접수인과 등기필인 날인되어 있음)'을 교부받은 경우, 그 '등기필증'을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⑤ 교부받은 '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'나 '등기필증'을 멸실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,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.

①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② 신청인등란

- ②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,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(관리인)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- ①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① 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② 해지증서

해지 등과 같이 전세권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.

③ 등기필증

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합니다. 전세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, 성명, 일련번호, 비밀번호를 각 기재(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)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합니다.

다만, 등기필증(등기필정보)을 멸실하여 첨부(기재)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.



< 시 · 구 · 군청 >

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납부서(OCR용지)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통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고 출력한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등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 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 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를 첨부합니다.

< 등기과 · 소 >

법인등기사항전부(일부)증명서

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(각,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를 첨부합니다.

<기 타>

- ①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, "대법원 종합법률정보 (http://glaw.scourt.go.kr)"의 규칙/예규/선례에서 『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, 등기예규 제1568호』 및 『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, 등기예규 제1435호』 등을 참고하시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, 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등기과·소의 민원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(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)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 예를 들어 갑 소유 부동산



에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■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해지증서, 등기 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